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9월 5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9월 5일

3. 제안이유

- 정책보좌관의 정원과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이 내무부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 관련 정원의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정책보좌관 정원 : 본청에 11명을 한시로 증원
  - . 지방행정 2급 1명 ('97. 6. 30)
  - . 지방행정 3급 3명 ('96. 12. 31 - 1명, '97. 6. 30 - 2명)
  - . 지방행정 4급 2명 ('96. 12. 31)
  - . 지방시설 4급 4명 ('96. 6. 30 - 1명, '96. 12. 31 - 3명)
  - . 지방수의 4급 1명 ('96. 12. 31)
-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 : 15명 증원
  - . 본청 : 9명 (7급 7명, 8급 2명)
  - . 사업소(자연학습원) : 6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책보좌관과 지방전임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있어

본청 정원인 898명을 918명으로 정책보좌관 11명과 전임전문직 공무원 9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과

사업소정원에 있어서는 369명을 375명으로 6명의 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한시적 정원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 . 정책보좌관 11명의 정원은 본청의 정원으로하여 그 정년을 기한으로 한시정원으로 운용하되 정원중 1명은 1996년 6월 30일까지로, 7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3명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되 그 기한이내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퇴직 할시는 퇴직한 날에 해당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과 시행일을 부칙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들의 임용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임의 계약채용방법을 통한 인력관리를 하여 음으로써 인력의 비효율적관리와 지방재정 부담 가중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의 개정과 함께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으로 책정토록 동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됨에 따라 전임전문직에 대해 본청정원 9명과 사업소 정원 6명으로 각각 증원하여 정원관리 코자하는 내용으로서
- 본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